

인권침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관 등이 아닌 사인(私人)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1
1. 인권침해 개관	4
1.1. 인권침해 개요	4
1.1.1. 인권침해의 의의	4
1.1.2. 인권침해 구제 개관	5
1.1.3. 인권침해 구제 관련 법제	8
2. 인권침해 유형	12
2.1. 평등권 침해	12
2.1.1. 평등권 보장	12
2.1.2. 평등권 침해 사례	14
2.2. 신체의 자유 침해	18
2.2.1. 신체의 자유 보장	18
2.2.2.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	20
2.3. 사생활의 자유 침해	23
2.3.1. 사생활의 자유 보장	23
2.3.2.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25
2.4.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28
2.4.1.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28
2.4.2.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30
2.5. 표현의 자유 침해	32
2.5.1. 표현의 자유 보장	32
2.5.2.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35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38
3.1.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38
3.1.1.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38
3.2. 인권침해 등의 진정	40
3.2.1. 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40
3.2.2.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등	46
3.3. 인권침해 등의 조정	50
3.3.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50
4.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53
4.1. 헌법소원 개관	53
4.1.1. 헌법소원 개요	53
4.2. 권리구제 헌법소원	55
4.2.1. 권리구제 헌법소원	55
5.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61
5.1. 민사소송 등	61
5.1.1. 민사소송 등	61
5.2. 국가배상 청구 등	66
5.2.1. 국가배상 청구	66
5.2.2. 형사보상 청구	69

1. 인권침해 개관

1.1. 인권침해 개요

1.1.1. 인권침해의 의의

인권의 의의

기본권과의 관계

헌법학이나 각종 법령에서는 인권보다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기본권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양자는 때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자유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침해가능성이 큰 기본권(이 콘텐츠에서 ‘인권’이라 함)만을 설명하였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전단).

국가의 인권확인 및 보장 의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후단).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와 인권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가 평등권이라는 인권침해 행위일 수 있지만 차별행위는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므로 인권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참조).

인권 제한

법률에 의한 인권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37조제2항).

비례의 원칙

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그 법률은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②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④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인권침해

인권침해 등의 행위에 대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충돌”이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하나의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키는 결과가 발생합니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예컨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종교의 자유) 자식의 수혈을 거부하여 결국 자식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자식의 생명권)와 같이, 두개 이상의 기본권이 대립되는 경우가 기본권 충돌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①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 ② 법익 형량의 원칙, ③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해석하는 원칙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1.1.2. 인권침해 구제 개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진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6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도 >

1. 인권상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2. 진정접수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합니다.	3. 사건조사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위원회의결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	---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홈페이지](#), [진정-진정안내-처리절차](#) >

조정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당·진정·민원-조정제도안내](#))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

위에 따라 청구된 권리구제 헌법소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 .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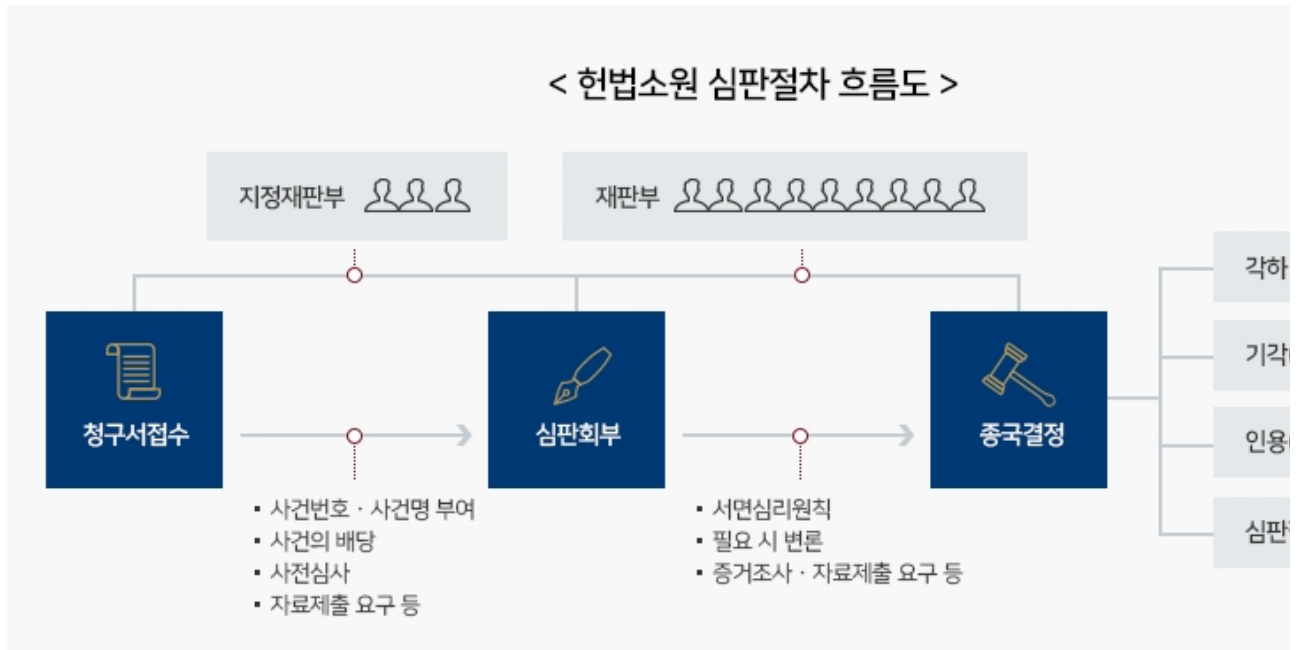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

헌법소원 절차

< 헌법소원 절차도 >



<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 >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 많이 이루어져왔고 주된 관심사였지만 최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도 널리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등

국가기관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의 [<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고소·고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전단 및 제267조제1항).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및 제318조의4제1항).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참조 및 제374조 참조).

※ 형사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의 [< 형사소송단계-공판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등

사인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1.1.3. 인권침해 구제 관련 법제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는 개별 기본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있을 수 있으며,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기본권보다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기본권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헌법재판소법」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위에 따라 청구된 권리구제 헌법소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다만,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청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청구

찾기 쉬운 생활법령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상소권(上訴權)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따라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6조제1항).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형사소송법」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해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등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청구

사인의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민사조정 신청

사인의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사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 청구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인의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피해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여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2. 인권침해 유형

2.1. 평등권 침해

2.1.1. 평등권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2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3항 :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평등권 일반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합리적인 차별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예컨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신체의 상이(傷痍)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정신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통상적으로 일반인에 견주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부여를 통해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하여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평등권 제한 등

정당의 특권

정당은 일반적인 집회·결사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8조제3항).

일반적인 집회·결사와 달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8조제4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군인·군무원 등의 군사재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2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0조제4항).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우선기회의 보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2항).

법률상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평등권의 개별적 보장

여성노동자의 차별대우 금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4항).

교육의 기회 균등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

평등선거의 원칙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평등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2항) .

2.1.2. 평등권 침해 사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간호사 모집 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하여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를 할 때에는 여성간호사에게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다.

②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 출처: [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무형유산 전승자 선정 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춤을 남성춤이라고 규정하고 보유자 등으로 남성만을 지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7. 10. 30. 07진차350](#)) .

① 피진정인은 학춤은 한량들이 추었던 남성춤이고 무형유산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의 보존’이기 때문에 남성만이 보유자 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원형과 관련하여 학춤의 복색이 남성의 것일 뿐, 과거에 처음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누구도 고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들만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학춤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남녀가 함께 학춤을 전승하여 왔다.

② 피진정인은 여성이 남성 복장을 하고 학춤을 추더라도 신체구조상 남성과 같은 춤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무형유산은 유형유산처럼 고정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시대를 거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 원형이 보존되는 특징이 있는바, ‘원형대로 보존’의 의미는 춤을 얼마나 몸에 잘 체득하고 있는가 하는 기능 또는 예능에 따라 좌우된다 할 것이다.

③ 「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문화재 보유자란 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보유자 후보 등 지정 시에도 해당 분야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능 또는 예능이 보유자 등의 지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기준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보유자 후보 등에 추천된 여성에 대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출처: [인권위 2007. 10. 30. 07진차350](#) >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5. 25. 09진차773](#)).

①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②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교정원의 7/100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③ 또한,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게 되면 남성은 고등학교 전후에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회와 대학졸업 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은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회만 주어져 남성에 비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되는 점, 공군 조종장교는 다른 병과의 장교에 비해 군 예편이후 고액 연봉의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재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점, 공군 사관후보생 선발이 군필자도 응시가 가능한 모병제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인권위 2010. 5. 25. 09진차773](#)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 시 연령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신규직원 채용 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9. 30. 09진차275·09진차912·09진차937·09진차957 \(병합\)](#)).

피진정인은 신규채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육체훈련 및 정보 전문교육을 거쳐 특수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필수적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는 아니다. 체력이나 학습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고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발절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상하관계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연장자와 연소자 간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근거가 되기 어렵고,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 출처 : [인권위 2009. 9. 30. 09진차275·09진차912·09진차937·09진차957 \(병합\)](#) >

아파트 경비원 채용 시 연령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및 경비용역계약 체결 시 경비원의 나이를 만 65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승계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8. 20. 10진정0235000](#)).

경비 본연의 업무수행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할 사항이지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주민들 입장에서는 경비원들이 책임감 있게 경비업무를 수행해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한 근태 관리 등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절도 등 사건 빈도가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 특별히 더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인해 경비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출처 : [인권위 2010. 8. 20. 10진정0235000](#) >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 시 전문대학 출신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정함으로써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7. 29. 10진정242400](#)).

대학 재학생들이 병 또는 장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복무형태를 미리 결정할 수 있게 하여 복무형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장교 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복무형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도 동일할 것이고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넓힘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육군3사관학교 정시모집 시 종전과 같이 전문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게도 지원자격이 주어지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선발제도 시행으로 정시모집 인원은 최종 선발인원의 약 50% 정도가 줄어들어 전문대학 학생들이 육군3사관학교 생도로 선발될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출처 : [인권위 2010. 7. 29. 10진정242400](#) >

행정인턴 모집 시 학력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인턴을 모집할 때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학력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3. 9. 08진차1326](#)).

행정안전부가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업무들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개별 부처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 특정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모집단계에서부터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기타 학력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7조는 “공무원 임용시험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학력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행정인턴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의 학력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 출처 : [인권위 2009. 3. 9. 08진차1326](#) >

그 밖의 차별행위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로 제공된 청약저축으로 채권을 보존할 수 있음에도 파산면책자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10. 18. 10진정210600](#)).

남성인 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부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①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소수라는 점이 이들을 달리 대우할 근거가 될 수 없고, ② 직업과 소득이 없는 남성에게 대해 실제 가사를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③ 결제능력을 보증하는 배우자가 여성이라 하여 상환불이행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이 전제되는 한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8. 17. 09진차225](#)).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결혼정보회사 가입 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용모를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6. 17. 09진차1688](#)).

결혼을 원하는 남녀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특정 조건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배우자감을 고를 때에는 한 가지 조건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키’라는 한가지의 조건만을 이유로 회원가입 자체를 거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피진정인은 키가 작은 남성회원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회원가입을 원하는 경우까지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 출처 : [인권위 2010. 6. 17. 09진차1688](#) >

대학교수 채용 시의 종교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가 건학이념과 관련이 없는 학문분야의 교수 채용 시 그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7. 5. 14. 05진차34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는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되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인 바, 학문적 진리탐구라는 고등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대학교원의 자격이나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을 보면 종교와 관련된 과목내용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해당 학과 교수가 세례기독교인이어야 할 필요성을 그 교과내용 자체로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학교 최초 설립자의 이념이 존중되고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종합대학의 모든 교과목의 교수와 학생지도가 같은 종교인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출처 : [인권위 2007. 5. 14. 05진차345](#) >

국가에 대한 가집행 금지 위헌(국가와 개인의 차별)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대해 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법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대한민국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고작용으로 인한 법률관계에서는 사인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해당 규정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얻어낸 승소판결에는 아무리 확신 있는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가집행의 선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 출처 : [헌재 1989. 1. 25, 88헌가7](#) >

2.2. 신체의 자유 침해

2.2.1. 신체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불인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5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7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신체의 자유의 의의

신체의 자유 보장

신체의 자유는 수사절차 등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침해소지가 높은 인권유형으로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이념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處罰)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입니다([헌재 1991. 7. 8. 91헌가4](#)).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칙입니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신체의 자유 보장의 내용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묵비권이라고도 합니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대한민국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고, 이는 고문 등 폭력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에 의해서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음주측정 거부와 진술거부권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진술거부권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해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만 한다는 데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및 [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이 핵심으로, 소송서류의 열람까지 포함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5항,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및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이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신체의 자유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2.2.2.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

신체의 자유 침해 일반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금지

헌법재판소는 금지처분을 받고 독방에 수감된 수형자에 대해 운동을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 “금지 수형자에 대해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금지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교도소 수감자에게 상시적으로 수갑 등 사용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수감자에게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戒具)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

또한,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에게 도주의 경력이나 정신적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 수용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고정시켜 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 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

정신병원 환자의 격리·강박 남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환자가 병원 종사자들에 의해 수차례 격리·강박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8. 9. 10진정216400](#)) .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의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된다.

또한, 격리 및 강박은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위 환자들에게 일부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와 종사자들이 격리 및 강박의 지시자와 수행자, 격리 및 강박의 사유와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 및 강박하였던 행위는 「정신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출처 : [인권위 2010. 8. 9. 10진정216400](#)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집회 현장에서 사진 촬영 시 체포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진정인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 “진정인이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집회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과정을 촬영하고, 때로는 그 집행과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진정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8. 23. 09진인4568](#)) .

긴급체포 호송 중 범죄사실 부인을 이유로 수갑 사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여 호송하는 중 범죄사실을 인정하다가 갑자기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에 대해 “경찰장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사용하였고, 이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6. 23. 09진인1146](#)) .

진술거부권 침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

대법원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헌법재판소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제도에 대해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법률에 의한 진술강요에서도 인정되는 것인 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 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 전 진술거부권 미고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폭행사건의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진정인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재산 등 개인신상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 있는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주거진술서도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4. 8. 23. 03진인6361](#)) .

영장주의 침해

영장대기자의 경찰서 보호실 유치

대법원은 영장대기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외국인 강제퇴거 집행절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구,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을 강제 연행하여 외국인 보호소에 유치하고 본국으로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에 대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력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나 구속절차와 같아서 외국인 강제퇴거 집행절차에 대해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이를 권고하였습니다([인권위 2008. 4. 28. 08진인2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국선변호인 선정 지연으로 인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대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피고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간도과를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자 2000모66 결정](#)).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신청 거부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해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해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장소에서 대화내용 기록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불법시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 중인 자와 그의 변호인간의 접견장소에 임의로 들어가 그 대화내용을 기록한 사건에 대해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접견부를 들고 접견실에 들어가 접견에 참여하고, 진정인과 변호인간의 초기 대화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변호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변호인의 주소지를 묻고 기록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4. 3. 31. 03진인6458](#)).

2.3. 사생활의 자유 침해

2.3.1. 사생활의 자유 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의 의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통신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 보장 내용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를 염두에 둘 때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의 ‘통신’의 의미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통신의 자유 침해 형태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형태로는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고 ① 우편물의 검열, ② 전기통신의 감청,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④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감청: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찾기 쉬운 생활법령

- √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 사용도수
-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통신의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한민국헌법」상 근거로는 「대한민국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대한민국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합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

2.3.2.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10. 26. 09진인590](#)).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 유폐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을 유폐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전과를 포함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입회한 가운데 과거 전과사실에 대해 조사를 함으로써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유폐하였고,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4. 26. 10진인435](#)).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사항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병역공개제도의 실현을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그 적정한 공개 자체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혼인빙자간음죄(위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58 등](#)).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害惡)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이고,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전 성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로 낙인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 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셈이 된다.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고,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법률이 이를 규제하면 충분하며,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非犯罪化)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세계적으로도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이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 그 밖에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의 약화, 형사처벌로 인한 부작용 대두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출처 : [헌재 2009. 11. 26. 2008헌바58 등](#) >

통신의 자유 침해

수용자간 서신 불허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교정시설 안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7. 9. 17. 07진인1745](#)).

서신교환에 대한 제한 사유는 개별적인 서신에 대해 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이라고 하여 항상 교화 또는 처우 상 특히 부적당하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서신은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신교환권은 「대한민국헌법」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에서 연유한 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건 동일 교정시설의 내부에 대한 것이건 간에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서신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인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출처 : [인권위 2007. 9. 17. 07진인1745](#) >

식당에 CCTV 및 도청장치 설치

대법원은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하여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은 통화내용 녹음

대법원은 전화통화의 양 당사자중 일방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의 경우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의 <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사의 수사·고소·고발](#) >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8. 24. 08진인390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응시자가 장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인권위 2009. 8. 24. 08진인3904](#) >

※ 위 결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10465호, 2011.3.29. 타법폐지, 2011.9.30. 시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2011.9.30. 시행)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수집된 본인정보 열람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재학생 본인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의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8. 11. 13. 08진인143).

※ 위 결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폐지, 2011.9.30. 시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2011.9.30. 시행)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2.4.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2.4.1.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 보장

양심의 개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성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합니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대한민국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아닙니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합니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성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 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입니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

양심의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 조항을 말함)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으며, 2019. 12. 31.까지 입법자에게 병역법의 개정의무를 부과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 대법원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판결).

종교의 자유의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의 보장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헌재 2000. 3. 30. 99헌바14](#)) .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 .

종교의 자유의 제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하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

종교 교리에 따른 집총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판결](#)) .

2.4.2.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양심의 자유 침해

국적취득 강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국적전환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 2009. 12. 1. 09진인2583](#)) .

피해자는 재일조선인의 특수한 역사적 사정에 입각하여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국적선택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 출처 : [인권위 2009. 12. 1. 09진인2583](#)>

경위서 낭독 강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청원경찰에게 직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교육장소에서 사유서를 낭독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 “경위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은 피해자의 내심에 있어서 윤리적 판단 등 양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공식기강교육 자리에서 표명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 중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 2010. 4. 12. 09진인752](#)) .

공무원의 각서 강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세무서에서 압류한 예금에 대해 그 해제를 조건으로 피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서에 서명하도록 한 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이 채권 압류 해제의 요건에 진정인의 각서 제출을 포함시킨 행위는 사실 상 각서 서명을 강요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진정인이 그동안 제기한 진정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 내용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에 개입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0. 7. 26. 09진인 4169).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단체가 설립한 평준화 고등학교의 강제적인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

대법원은 종립 고등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이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된다.

< 출처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종교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무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7. 23. 10진정0049700).

종교의 자유의 보장 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종교행사에서의 불참석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위력 있는 3대 종교 뿐 만 아니라 소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 출처 : [인권위 2010. 7. 23. 10진정0049700](#) >

군의원 후보생의 가입교(假入敎) 기간 종교활동 불허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가입교 기간 중 가용시간의 부족으로 군의원 후보생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한 사건에 대해 “종교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훈련소 내의 시간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자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8. 7. 17. 08진인480).

유치장 내 종교행사 강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입감자에게 기독교인들이 찾아와 성경과 찬송가를 나눠주고 큰소리로 예배를 보게 한 사건에 대해 “특정 종교의 교인이 아니거나 원치 않는 유치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종교의식은 특정 종교의식의 참여 강요가 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6. 6. 28. 06진인952](#)) .

2.5. 표현의 자유 침해

2.5.1. 표현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미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합니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

보호되지 않는 언론·출판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됩니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언론·출판의 자유는 허가나 검열의 방법을 제외하고(「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사전검열제도의 의미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검열에 해당합니다. ▶ 비록,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대한민국헌법」상 금지된 검열을 하는 것입니다. < 출처 :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의 의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이하 ‘집회의 자유’라 함)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자유의 향유는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여론표현과 여론 형성의 수단인 동시에 대의기능이 약화되었을 때에 소수의견의 국정반영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헌재 1992. 1. 28. 89헌가8](#)).

※ 법령용어해설

집회(集會) :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시위(示威)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울지방법원은 ‘1인 시위’에 대해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 한편, 울산지방법원도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1인 시위’에 대해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근로자 1명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회사의 경영진에 제한되므로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집회의 자유의 보장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및 시간의 선택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금지됩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집회의 자유의 제한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을 근거로 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개최, 진행, 참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라야 합니다.

그 밖에도 선거·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려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 집회 및 시위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집회·시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사(結社)의 자유 보장

결사의 자유의 보장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존속의 자유, ③ 단체활동의 자유, ④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해 자유의사에 따라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헌재 1996. 4. 25. 92헌바47](#)), 법령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해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결사의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2.5.2.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 (위헌)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1998. 12. 24. 96헌가23](#)).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에 관해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위에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비디오물의 그 제작기자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제작·판매 등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제작·판매 등을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에 위반된다.

< 출처 : [헌재 1998. 12. 24. 96헌가23](#)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위헌)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08. 10. 30. 2004헌가18](#)).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 ①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일환으로 유통 전에 비디오물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루어질 뿐 아니라,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 ④ 국고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⑤ 등급을 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등급분류가 보류된 비디오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많은 비디오물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 등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에게는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⑥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무한정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하여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

< 출처 : [헌재 2008. 10. 30. 2004헌가18](#) >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 배포에 대한 징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 같은 학교의 학우들에게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인권위 2008. 2. 28. 07진인1146](#)).

진정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학생인권을 위해 외부단체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의 참석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현실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전단지의 교내 배포절차와 위반 시 징계에 대한 명시적 학내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해 진술서 작성요구 등의 조사를 하고 선도위원회 참석 공문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출처 : [인권위 2008. 2. 28. 07진인1146](#) >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 집회 금지

헌법재판소는 국내주재의 외국 외교기관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에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어서 위헌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행정권인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출처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

학생에 대한 학내집회 강제 해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학내집회를 학교 측이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강제로 해산하고, 정규수업 시간에 집체교육을 시킨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회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학내집회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 인권단체)’ 활동가인 진정인이 선동하여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점으로 보아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집체교육시간에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함으로써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3.1.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3.1.1.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 개념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110호, 2022. 7. 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개념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함),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본문).

-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행위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로 보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각 호 외의 단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2조제2호).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성·장애 등과 같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등

국가기관과의 협의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20조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함)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2항·제3항) .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제1항·제3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제2항) .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제1항) .

시설의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1항)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제2항)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해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2항) .

3.2. 인권침해 등의 진정

3.2.1. 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조사 절차

1. 인권상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2. 진정접수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합니다.	3. 사건조사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위원회의결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	---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홈페이지](#), [진정-진정제도안내-처리절차](#) >

진정접수

진정의 주체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제1항).

진정할 수 있는 사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 제6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차별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국가인권위원회 개관-국가인권위원회 개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진정”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합니다(「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진정방법

문서진정

진정인은 진정서(「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전화진정

진정인이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에 관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정인에게 접수담당자의 이름을 알려줘야 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술(口述) 진정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에게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하고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에 관한 규정」 제6조).

대리인 및 대표자의 진정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 제9조제1항).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함)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진정해야 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 제9조제2항).

여러 명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하는 경우 또는 진정내용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동일한 피진정인에 의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것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 제9조제3항).

사건의 조사

조사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방법으로 진정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 제22조 및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참조).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함)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간이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출석요청이나 서면조사 대신 전화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위원 등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해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2항·제5항).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직권조사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피해자 및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권조사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미리 송부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5조제1항).

사건의 소위원회 상정

조사부서의 장은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4조제1항).

제보자 등의 보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8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8조제3항).

진정의 각하 및 이송

진정의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認知)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라도 그 진정이 위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진정의 이송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2항).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따라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제3항).

심의·의결

주심위원의 사건검토

진정사건이 소위원회에 상정되면 소관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 인권위원을 선정하여 사건을 검토한 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36조제1항).

소위원회의 심의

소위원회는 주심 인권위원의 검토보고서 또는 조사부서의 장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37조제1항).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주심 인권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에게 추가조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37조제2항).

※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합의서를 작성·제출하고, 조사부서의 장은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 후 사건을 종결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32조).

구제방법

합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각 호).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등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 이 경우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3항).

국가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2항).

※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4항).

법률구조 요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조정

당사자의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진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3.2.2.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등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방문조사 의결 및 사전통지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1항).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구금보호시설 :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제3호).

-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을 위해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
- √ 외국인 보호소
- √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시설)

방문조사 방법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

방문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함)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4항).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인권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5항).

인권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에서 다음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나 시설수용자 등의 진술을 듣는 방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방법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해당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할 수 없습니다.)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인권위원 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을 하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인권위원 등은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인권위원 등의 승낙 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인권위원 등은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건강상의 위해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그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진정을 위한 편의 제공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1항).

진정방법 고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진정함 설치·운용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 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고,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정서 또는 서면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낸 서면 열람 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명의로 서신을 개봉한 결과 해당 서신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서신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해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시설수용자의 진정 방법

진정서 작성 및 송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 소속공무원 등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1항), 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3항 전단).

면전(面前) 진정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또는 소속 직원을 직접 만나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즉시 그 뜻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2항), 이에 대한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3항 후단).

구금·보호시설 소속공무원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인권위원 등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수용자에게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 제3조제3항 및 제4항).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나 시설수용자 등의 진술을 듣는 방법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방법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해당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원 등의 방문 진정접수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인권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진정 신청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시설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5항 및 제24조제4항).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 하려는 사람을 포함)과 인권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6항).

구금·보호시설의 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7항).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
※ 인권침해 사유 ◎ 다음과 같이 법무행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 제834호, 2011. 9. 8.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보호·출입국·수사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진정방법 ◎ 법무행정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자는 문서, 팩스, 인권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전화(080-503-0022), 방문 등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 ◎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길 원하는 경우 그 구금·보호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수용자가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및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법무부훈령 제834호, 2011. 9. 8.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구제절차

3.3. 인권침해 등의 조정

3.3.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조정 개관

조정의 의의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담·진정·민원-조정제도안내](#)) .

진정인의 조정신청

조정신청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조정을 신청하려면 진정서 접수단계 또는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사실의 통지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사실을 통지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47호, 2021. 3. 15. 발령·시행) 제4조제1항] .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사실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0일 내에 주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 .

직권조정 회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

직권조정 회부 사실 통지

사건 담당부서는 당사자에게 직권조정 회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제1항) .

조정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않고,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

조정기일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없는 경우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

대표당사자

여러 명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명 또는 2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1항·제2항) .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 대표당사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 .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표당사자가 선임되면 조정기일 통지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4항).

조정의 성립 및 이의신청 등

조정의 성립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5항).

이의신청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6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과 진정절차가 재개된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2항).

조정의 효력

조정의 효력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 법령용어해설

재판상 화해 : “재판상 화해”란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의 화해를 포함합니다. 소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수소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4.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4.1. 헌법소원 개관

4.1.1. 헌법소원 개요

헌법소원의 종류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위에 따라 청구된 권리구제 헌법소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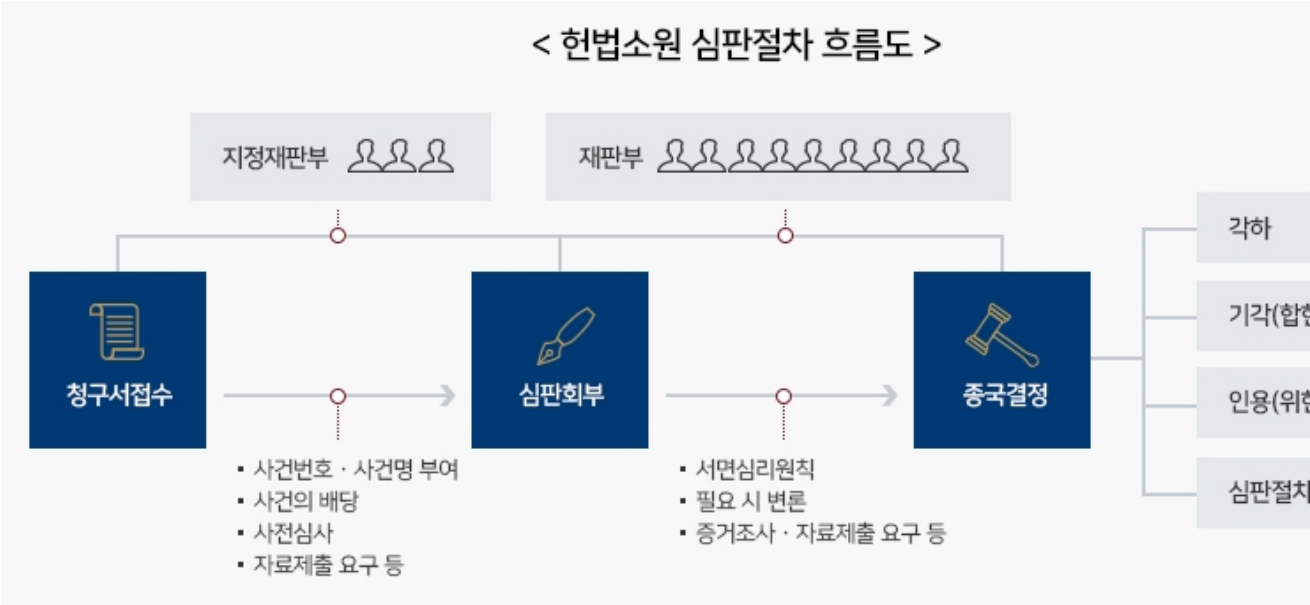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위헌심사 헌법소원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 절차



<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의 사건부호
◆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부호가 부여됩니다. ▶ 헌가: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나: 탄핵심판사건 ▶ 헌다: 정당해산심판사건 ▶ 헌라: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마: 권리구제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바: 위헌심사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사: 각종 신청사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 헌아: 각종 특별사건 (재심 등)
<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참여·소통-FAQ 참조 >

4.2. 권리구제 헌법소원

4.2.1. 권리구제 헌법소원

권리구제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권리구제 헌법소원의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위에 따라 청구된 권리구제 헌법소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합니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법률 또는 입법부작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대법원 규칙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본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찾기 쉬운 생활법령

보충성 (최후의 수단)

보충성 (최후의 수단)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청구방법

청구기간

일반적 청구기간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전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재판 안내-헌법소원심판 청구방법](#)).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이 침해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재판 안내-헌법소원심판 청구방법](#)).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헌법소원 청구기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후단).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

국선대리인 제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전단).

국선대리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선임됩니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3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제1항).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피청구인(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는 제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경유에 관한 사항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3항).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9조제1항).

※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예시](#)

※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예시](#)

※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예시](#)

찾기 쉬운 생활법령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예시

권리구제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4항).

헌법소원심판 절차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1항·제3항).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4일 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3조제1항).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4항 전단).

전원재판부의 심판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하여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

결정

헌법소원의 종국결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헌법재판소-헌법재판 안내-헌법재판소 권한-헌법소원심판-종국결정의 유형](#)).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 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 또는 합헌 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인용 또는 위헌 결정

심판절차 종료선언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 결정을 하며, 헌법소원의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

인용결정의 효력

인용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75조제1항) .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 안내-헌법재판소 권한-헌법소원심판-결정의 효력](#)) .

5.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5.1. 민사소송 등

5.1.1. 민사소송 등

민사소송 등 개요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의 의미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의 신청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및 「민사조정법」 제6조).

민사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민사조정 기일의 통지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민사조정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한편, ①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민사조정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발생하며,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결정문을 채무명으로 삼아 강제집행(간접강제)을 신청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편 참조).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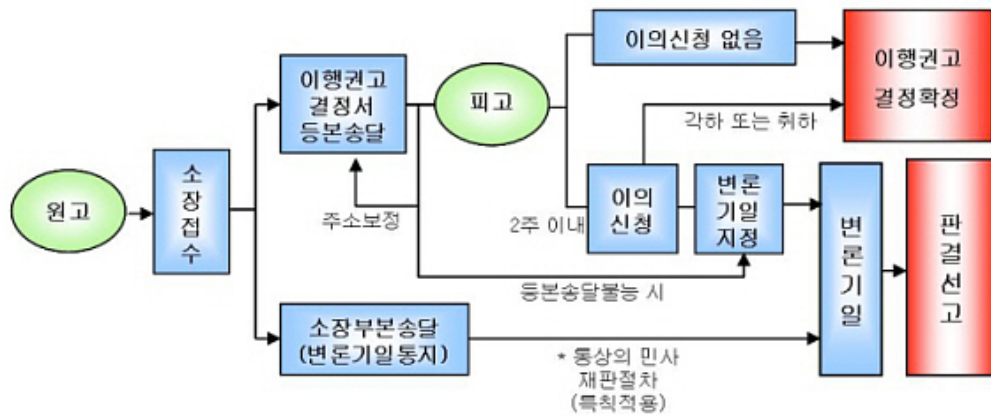
※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의 [< 민사분쟁의 간이절차-민사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각 호 외의 본문).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참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며,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분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참조).

※ ① 피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변론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 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참조, 제10조제3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참조).

판결의 선고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개념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소장부분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변론준비 절차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 참조).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부터 제284조까지 참조).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참조).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참조).

변론기일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참조).

민사소송의 효력

찾기 쉬운 생활법령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08조).

민사소송 비용

소송비용 패소자(敗訴者) 부담 원칙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 등 및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참조).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거나,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소자(勝訴者)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참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frac{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frac{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frac{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frac{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frac{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frac{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frac{0.5}{100}$]	0.5%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의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로 감액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1/2의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5.2. 국가배상 청구 등

5.2.1. 국가배상 청구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가배상 청구의 의의

국가배상의 개념

“국가배상”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다만,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

외국인의 배상 제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국가배상법」 제7조).

배상 기준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함)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5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별표 4).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여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 월급여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 “취업가능 기간”이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와 같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함)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위자료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5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별표 6 및 별표 6의2).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애(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애배상(障害賠償)

※ 장애등급

- √ 신체장애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합니다.
- √ 신체장애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합니다.
- √ 신체장애의 가장 중한 부위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신체장애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합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위자료

- √ 신체의 장애가 없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해 1일에 2만원
- √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사망 또는 상해의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 기간의 범위에서 개호비를 지급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

배상액 공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뺍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제1항).

유족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다음 기준에 따른 생활비를 공제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7).

- √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
- √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

유족배상과 장애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에 따라 중간이자를 뺍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제2항·제3항 및 「국가배상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시행령」 제6조제3항) .

배상방법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송무업무-자주하는 질문](#)) .

배상결정 후 지급 청구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

5.2.2.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찾기 쉬운 생활법령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도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 형사보상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

- ▶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07.3.22. 자 2006코17 결정](#)).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찾기 쉬운 생활법령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의 청구

청구권자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한편,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청구방법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제출서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무죄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사보상 청구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2011년 12월 31일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헌재 2010. 7. 29. 2008헌가4) . ※ 만약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2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보상법」 제7조는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 또한, 「형사보상법」 제7조는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등 형사피고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청구의 취소 및 중단·승계

청구의 취소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다른 전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청구의 중단·승계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2개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판단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며,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

청구 각하의 결정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제2항 및 제4항).

- √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경우
- √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 √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 √ 보상청구 절차가 중단되고 2개월 이내에 보상청구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경우

청구기각의 결정 : 형사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가 기각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보상결정 :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 결정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405조),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불복 신청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19조제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위헌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 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데다 그 재판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관한 법률」 제21조)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

◇ 피의자보상의 요건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단서) .

- √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 √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7조)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 √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 √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피의자보상의 청구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고지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① 보상청구서와 ②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피의자보상금의 청구

피의자보상심의회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및 제30조) .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26조제1항).

-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청구방법

제출서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상속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상속인에 의한 청구 및 그에 대한 소명, 대리인에 의한 청구, 청구의 취소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

청구에 대한 조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게재 기간은 1년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